

답 변 서

발 신 인: 담당변리사 주현재

[의뢰인: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

수 신 인: 법무법인 이음

참 조: 법무법인 이음 저작권 3팀 담당자 송일국 대리

제목: (주)한양정보통신 울릉도 폰트 저작권의 침해 주장에 대한 답변

1. 발신인은 의뢰인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를 대리하여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이하 "의뢰인"은 발신인의 의뢰인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를 지칭합니다.

2. 귀 소는 (주)한양정보통신(이하 "귀 소 고객"이라 하겠습니다)을 대리하여 2021년 3월 23일자로 의뢰인의 웹사이트에 표기된 로고에 적용된 서체가 귀 소 고객의 폰트 파일 저작권과 관계되었다는 이유로, '라이선스 사용권 보유확인 협조 요청의 건' 서신을 발송하신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귀 소 고객이 폰트 파일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취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차 진행에 앞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웹사이트에 표시된 표장이 귀 소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귀 소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며, 폰트 파일 저작물의 침해는 해당 폰트 파일의 복제/변형/배포/전송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귀 소가 제시한 사용 형태는 캡처한 이미지를 게재한 것으로, '특정 서체로 제작된 이미지 파일'에 불과합니다. 이는 폰트 파일 자체의 복제/변형/배포/전송 등 폰트 파일의 임베딩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나타난 표장에 '울릉도' 폰트가 적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서체로 제작된

이미지 파일이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은 애초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

귀 소가 제시한 사용 증거 자료는 의뢰인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것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귀 소 고객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울릉도' 폰트 파일이 이용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귀 소가 제시한 자료는 캡처된 것으로 편집/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법적 분쟁 시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귀 소가 제시한 자료가 유효하더라도 귀 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사단법인** 부분의 경우 '사'의 초성 'ㅅ'부분이나 '인'의 초성 'ㅇ'부분의 획이 계단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의 각 중성 혹은 종성에 그림자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산의료선교복지회** 부분에서도 각 글자 중 'ㅇ'과 'ㅅ'의 경우 계단 처리가 된 것이 명확하며, 각 글자의 중성 혹은 종성에 그림자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폰트 파일이 아닌, 이미지 자체가 사용된 것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애초 '울릉도' 폰트 파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어떠한 특정 폰트 파일이 임베딩의 방식으로 웹사이트에 이용된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 웹사이트의 해당 이미지는 라이선스 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I(Corporate Identity)란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출처를 대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총괄 상표(심벌, 로고, 이미지)'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사단법인으로서 경제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곳입니다. 특히 귀 소가 제시한 **사단법인 동산의료선교복지회** 부분은 웹사이트 상에서 단 1회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으로 자신들을 나타내려는 용도로 사용하는 표장도 아닙니다. 즉, 귀 소가 제시한 사용 증거는 CI가 아니며, 나아가 CI의 성격을 갖는 표장도 아니므로 애초에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귀 소 고객이 주장하는 해당 폰트 저작물은 문서 작성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해당 문서 작성프로그램의 권리자에 의해 정품 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과정에서 함께 배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폰트 파일 관련 약관에 라이선스 관련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사용'을 방지하는 어떠한 기술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1차적인 법적 책임은 해당 문서 작성프로그램의 권리자가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캡처 형식으로 제작된 이미지는 애초에 폰트 파일이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에서 의뢰인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는 애초 라이선스 계약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의뢰인은 별도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복제되는 폰트 파일들을 업무상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에서는 일절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선교활동을 펼치는 사단법인으로서, 웹사이트를 전담할 인력을 운용할 여력이 부족하며 웹사이트 관련 업무처리는 활동 현황을 게시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의 의무인, 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단순 업무입니다. 귀 소가 제시한 사용 자료는 누군가의 선의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 사무실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므로, 의뢰인이 설치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의뢰인이 설치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도안도 아니며,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닌 이상 의뢰인은 별도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소는 의뢰인이 '울릉도' 폰트 파일 자체를 이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귀 소가 제시한 자료는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조작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웹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에 적용된 서체가 '울릉도' 서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이미지는 의뢰인의 법인격과 사용 태양을 볼 때 CI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파일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어서 라이선스 계약 대상이 아닌 점,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이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점에서 의뢰인은 귀 소 고객과의 관계에서 본 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본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락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귀 소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귀 소 고객과 직접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사자의 위치도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인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귀 소 고객이 문제 삼는 이미지로 인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폰트 파일 자체의 배포 없이 이미지의 형태로만 게재 되었으므로 귀 소 고객도 폰트 파일 저작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라이선스 관련 약관을 준수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귀 소 고객으로부터 이번 권리 대항을 받은 것에 당혹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펼치는데 작은 방해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련 이미지의 교체까지 단행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의뢰인에게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내용증명 서신 혹은 최고장이 송달되거나, 민사소송

이 제기되는 경우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알려드리며,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공갈죄/공갈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대리인

변리사 주현재